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구비서류 등 변경 사항 안내 (21.8.9)

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제출 시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뒷자리 7자리 가림처리) 제출만으로 요양비 위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요양비 제도시행 유예기간 대상 건에 대하여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21.8.9.오픈 하였으며, 이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2차) 추가 안내('2021.8.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 가능 건》

❖ 제도시행 유예기간 대상

- (대상) '21.6.30.부터 8.31.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 단,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
- (조건) 전산청구, 서면청구 병행 가능
- (적용) 2021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 제도시행 이전 대상

- (대상) '21.6.29.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조건) 법령 개정 전 방식에 따라 전산청구, 서면청구 병행 가능
- (적용) 2021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